

제 532 호

1978. 12. 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조	례		
제 998 호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병원수가조례...	3
○규	칙		
제 1536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0
제 1537 호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단체 및 조합의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정중개정규칙.....	11
○훈	령		
제 436 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12
○관	리규정		
제 49 호		(지하철본부)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운수 수입취급규정중개정...	15
제 50 호		(지하철본부)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중사원 직무담당자 자격규정.....	15
○고	사		
제 19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9
제 194 호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지적일부변경승인.....	19
제 195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및지적승인.....	20
제 197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계 198 호	주택개량을위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21
계 19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22
계 200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23
계 201 호	도시계획지구(방화지구)지정및지적승인.....	25
○공 고		
계 282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공고.....	26
계 28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6
계 284 호	환지에정지 일부변경 지정공고.....	30
계 285 호	환지계획일부 변경공람공고.....	31
계 28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1
계 287 호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33
계 288 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33
계 289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	33
계 291 호	토지구획정리 사업변경 인가신청에 따른 공고.....	35
계 358 호	(도봉구공고) : 공인신조(개각)및폐기공고...	36
○사 명		39
○정 정		40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 998 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부속병원수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 점 생 인

1975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립 학교건강관리소
부속병원 수가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이하 학교건강관리소라 칭한다) 설치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수가라함은 사용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말한다.

제 3 조 (수가) ① 학교건강관리소 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 칭한다)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규정에 의한다.

②진함에 규정된 수가는 년표 1의 수가 기준액 범위내에서 병원장이 이를 정하며, 고가약품을 사용할때는 그 실비를 가산할 수 있다.

제 4 조 (수가의 감면) 병원장은 진료료를 받는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학생으로서 거주지 동장의 증명을 요구하는 자
2. 기타 병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 가 (酬 價) 기 준 표

1. 진찰 및 진단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진 찰 료	1 회	70	6 개월간 유효
보 통 진 단 서	1 통	140	
특 별 "	1 통	1,750 - 7,000	X-레이및 검사료 별도
진 강 "	1 통	210	"
신 체 검 사 료	1 회	350	"
신 체 검 안 료	1 회	1,050 - 1,400	"
병 사 용 진 단 서	1 통	700	"
환 자 소 견 서	1 통	350	"
감 정 서	1 통	700	"
시 아 검 안 료	1 회	350 - 700	
안 저 검 사 료	1 회	70 - 350	
안 압 측 정	1 회	70 - 350	

다만, 동일진찰 동시에 2통이상을 발급할 때는 1통을 초과할 때마다 원본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검 사 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대 변 검 사	1 건	70 - 210	
소 변	1 건	70 - 210	
보 통 생 화 학 적 검 사	1 건	70 - 210	
복 수	1 건	280 - 490	
보 통 혈 액 검 사	1 건	70 - 350	
복 수 혈 액 및 혈 청 검 사	1 건	280 - 490	
세 균 배 양 및 내 성 검 사	1 회	560 - 1,050	
객 담 검 사	1 회	70 - 210	
폐 기 능 검 사	1 건	700 - 1,050	
상 건 도	1 회	700 - 1,050	
위 액 검 사	1 건	350 - 560	
도 발 검 사 염 색	1 회	70 - 210	
지 능 권 사	1 회	1,400	
의 파	1 회	2,800 - 3,500	

3. 약 가

종 별	구 분	시 약 대	적 요
내 복 약 (산제)	1 일분	60	
(수제)	,	60	
돈 복 약	1 회	60	
의 용 약	1 개분	70	

다만, 고가약(주사약포함)을 사용할때는 별도 가산 경수한다.

4. 수 술 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소	수	1 회	1,400 - 4,200	
중	'	1 회	4,200 - 14,000	
대	'	1 회	1,400 이상	
외	래 수 술	1 회	700 - 2,100	
정	상 분 만 료	1 회	2,100 - 3,500	
이	상	1 회	3,500 - 10,500	
5. 주 사 수 수 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피	하 및 근육 주사 수 수 료	1 회	70	
정	맥 주 사 수 수 료	1 회	100	
링	결 주 사	1 회	90	
수	혈 주 사	1 회	420	
관	절 및 척추장내주입수수료	1 회	420	
6. 처 치 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일	반 의 과 처 치 료	1 회	140 - 350	
정	형 의 과 처 치료 스프린트	1 회	1,400	
	' 기브스(소)	1 회	2,100 - 3,500	
	' (중)	1 회	3,500 - 7,000	
	' (대)	1 회	7,000 이상	

종	별	구분	수	가	적	요
화상치료 (경 중)		1 회	1,400	-	4,200	
· (중동중)		1 회	4,200	-	7,000	
· (중 동)		1 회	7,000 이상			
피 부 파 처 치 료		1 회	140	-	350	
안. 이 비 인 후 과 처 치 료		1 회	140	-	350	
부 인 과 처 치 료		1 회	210	-	700	
누 막, 복 막 천 자 료		1 회	700	-	1,050	
요 계 수 천 자 료		1 회	700	-	1,050	
이 화 학 적 처 료		1 회	350	-	1,050	
위 및 장 세 처 료		1 회	700	-	1,050	
관 장 토 비 누 관 장		1 회	210	-	700	
· 구 리 세 린 관 장		1 회	210	-	700	
· 관 장		1 회	350			
· 카 스 관 장		1 회	350			
전 기 충 격 요 법		1 회	700	-	1,400	
약 물 병 용 충 격 요 법		1 회	1,050	-	2,100	
아 미 탈 먼 담		1 회	700	-	1,400	
정 신 요 법		1 회	700			
교 압 산 소 처 료		1 시간	시 가			
산 소 흡 입		·	210			
중 기		·	240			

다만, 특수처치일시는 본 기본요금에 그 실비를 가산 정수한다.

7. 벨트 경로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음 부 활 영	1 회 14 × 17	840	
·	1 회 11 × 14	700	
·	1 회 10 × 12	560	
두 부 활 영	1 회	700	
유 양 물 기 활 영	1 회	700	
척 수 활 영	1 회	840	
식 도 조 영 활 영	1 회	1,750 - 3,500	
자 궁 ·	1 회	1,750 - 3,500	
상 부 위 장 조 영 활 영	1 회	1,750 - 3,500	
담 낭 활 영	1 회	2,100 - 3,500	
대 장 ·	1 회	2,100 - 3,500	
신 우 조 영 활 영	1 회	2,100 - 3,500	
치 과 활 영	1 회	210	
척 수 조 영 활 영	1 회	2,100 - 3,500	
기 관 지 조 영 ·	1 회	2,100 - 3,500	
무 시 ·	1 회	700	
간 접 활 영	1 회	350	
단 종 ·	1 회	1,400 - 3,500	

8. 입 원 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1	등	1	일	1,750		·	사 포함
2	등	.		1,050		.	
3	등	.		700		.	
9. 처다수수료 및 처치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처	치	료	1 회	140 - 350			
유	치	발	1 치	210 - 350			
특	수	발	1 치	700 이상			
영	구	치	1 치	350 - 700			
보	통	수	1 회	700 - 2,100			
특	수	.	1 회	2,100 이상			
중	진	아	1 와	350 - 700			
중	진	아	1 와	700			
고	.	경	1 치	1,400 - 7,000			
보	격	장	1 치	1,400 - 3,500			
배	진	상	1 약	2,100 이상			
치	석	제	1 회	1,400 - 2,100			
인	상	로	1 상	210			
.	.	일	1 상	350			
.	.	건	1 상	700			
다만, 귀금속은 가격변동에 따라 그 실비에 5%를 가산 경수한다.							

10. 마 취 료		
항 목	수 가	적 요
1. 전달마취 및 신경절전단술 가. 상박신경총 전달마취 나. 피 부 마 취 다. 신경 길 마 취	700 - 2,100 700 - 2,100 700 - 2,100	
2. 척 추 마 취	1,400 - 3,500	
3. 지 장 마 취 (단독)	1,400 - 3,500	
4. 정 맥 ()	1,400 - 3,500	
5. 흡 입 마 취	2,100 이상 (시간당)	

다만, 마취에 필요한 약제 및 기타 재료는 별도로 그 실비만을 가산 정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배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536 호

서울특별시 급수조배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배시행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 2항 업무용 제 1종 본문중

•다음에 제기하는 업태 및 이와 유사한 업태를 •다음에 제기하는 업태와 이와 유사한 업태 및 월 200 명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로 하고, 동항 제 7호 의료기관의 주요란중 •가족병원 •다음에 •및 목욕탕 갑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를 삽입한다.

별표 제 4항 목욕탕 갑종 본문을 가호로 하고, 동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육조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 대한 급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비자조합 보호단체 및 조합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7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537 호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단체 및 조합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단체 및 조합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소비자보호단체의 신고자격)
 영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법인
2.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사회단체의 위하기관

제 4 조중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5 호내지 제 8 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임원의 명단 1부

제 7 조중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 10 조 (자원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불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 조 제 4 항에 의한 자원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국제적인 조직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2.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때
3.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2 회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않은 때
5. 연간 소비자보호사업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때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 11 조 (조합의 등록) 영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합이나 단체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열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설립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
- 2. 15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시장이 정한 정관명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
- 3. 1개조합의 조합원수는 100인 이상일 것.

제 12 조 중 제 1 호 내지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6 호 제 7 호를 삭제한다.

- 1. 정관 1 부
-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 통
- 3. 조합원명부 1 통
- 4. 임원의 신원증명서 1 통
- 5.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각 1 통

제 18 조 중 제 1 항 제 1 호 제 3 호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 11 조에 규정된 요건에 결함이 있을 때
- 2.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장사무처리규정 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서울특별시훈령 제 436호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장 사무처리규정 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장사무처의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을 삭제한다.

제 1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 조의 2 (양수기 검침불능시의 급수량 조정) ①양수기 고장(불회, 침탈락 등) 분출, 수포 또는 검침장애(양수기 예물, 장애물 적치, 호폐 등) 기타 사유로 양수기의 정상적인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인성 조정한다.

②가사용의 인성조정은 전월 사용 실적에 별표 제 3 호에 의한 계절별 사용량 증감율을 가감한 양으로 인성조정하고, 기타업종은 전월 조정실적과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의한 사용량을 감산한 양으로 인성조정한다. 다만, 전월 조정실적이 누수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 3 개월(가사용 적월 검침의 경우는 전 4 개월)의 평균 조정실적을 전월 조정실적으로 간주한다.

③제 2 항에 의한 인성조정량은 다음 검침때에 정산 조정한다. 다만, 양수기고장(불회, 침탈락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양수기가 회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 사용 저침에 의거 해당월분을 조정하되 즉시 검침 조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월분을 경정 조정하거나 추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인성조정은 계속 2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 59 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⑤양수기 검침불능으로 통보된 급수전의 급수사용도 조정은 제 13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제 3 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1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 3 호

가사용 제철별 사용량 증가율표

납 기 별	전 납 기 기준 증 감 율 (%)
1	-15
2	
3	- 5
4	
5	10
6	
7	15
8	
9	20
10	
11	-15
12	
1	-15
2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조정하는 경우로서 본표에 증감을 표시가 없는 납기는 전납기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운수수입취급규정 중 개정안을 이에 발령한다.

197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 제 4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운수수입취급규정 중 개정

1974. 8. 1

지하철운수사업관리규정제 5 호

1975.11.14. 49 호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운수수입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 조 (과부족액에 대한 수납 대체 반환처리) 여객일보를 제출한 후 여객운임의 부족액 또는 과납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여객운임정정명령

서 또는 여객운임정정명령서에 의하여 부족액을 수납 또는 대체하거나 과납액을 반환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 종사원 직무담당자 자격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75. 12. 15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제 50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
종사원직무담당자자격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하철현업기관의 운수종사원중 특별직무담당자 및 증전간부의 임용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특별직무담당자"라 함은 특별기량을 요하는 직무의 담당자로서 운전기사 및 차장을 말한다.
- 2. "중전간부"라 함은 분야별 담당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운전사령, 운전사령주임, 조역, 선임지도운전기사, 지도역무원, 지도운전기사를 말한다.
- 3. "임용"이라 함은 전 2호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함을 말한다.

제 3 조 (운전기사예정자선발) ① 운전기사예정자는 별표 1호에 의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기사예정자를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교육 개시 15일전까지 지하철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운전기사의 임용) 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결정된 운전기사예정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운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필요한 견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운전기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운전기사예정자는 전항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소정의 견습기간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단독

승무할 수 없다.

제 5 조 (차장의 임용) ① 차장은 별표 1호에 해당자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① 차장은 15일 이상의 견습기간을 마친 후에야 단독 승무할 수 있다.

제 6 조 (중전간부의 임용) 중전간부 임용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현업 기관설치규칙 제 4 조 및 제 5 조에 규정된 자로서 별표 2호의 해당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자격정지) 운전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하철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의 발생으로 직무담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2. 중대한 부주의 또는 고의로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시켰을 때
- 3. 직무상 태만으로 열차운전사고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특별직무담당자 및 중전간부직에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자격 또는 경력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표 1호> 특별직무담당자선발기준		
직 위	소 요 경 력	직 급
운전기사예정자	1. 차장경력 1년 6월 이상인 자 2.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기능직 8 등급이상
차 장	1. 역무원으로 2년이상 경력자 2. 역무원 이외의 과로 차량검수 부분에서 3년이상 경력자	기능직 9 등급이상
<별표 2호> 증견간부검용기준		
직 위	소 요 경 력	직 급
운전사령	지도운전기사 또는 지도역무원으로 1년 6월이상 경력자	기능직 7 등급이상
운전사령주임	운전사령 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기능직 6 등급이상
조 역	지도역무원 또는 지도운전기사로 1년 6월이상 경력자	기능직 7 등급이상
선 임 지도	1. 지도운전기사로 1년 6월이상 경력자	기능직 6 등급이상
운 전 기 사	2. 운전기사 경력이 있는 지도역무원으로 2년이상 경력자	
지 도 역 무 원	1. 운전기사로 1년이상 경력자 2. 차장으로 2년이상 경력자	기능직 6 등급이상
지 도 운 전 기 사	운전기사로 1년이상 경력자	기능직 7 등급이상

< 별지 제 1 호 서식 >

운전기사예정자추천서

(기 관 명)

(분류기호및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년월일)

수 신 지하철본부장

참 조 운수과장

제 목 운전기사 예정자 추천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종사원 직무담당자 자격규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전기사 예정자를 추천합니다.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학 력	
경 력	
기 타	

끝

○ ○ ○ 장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198 호(71.4.7) 시할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이 규정과 건설부 고시 가. 지적승인 조서

제 123 호(73.4.4) 이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1. 24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인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중로	1	136	20	24,770	비 1 한강교 남단	하일동시계	천호대교 - 교덕동간 지적 승인
	중로	1	134	15	8,000	통남동(광 34)	교덕동 (대 3-67)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94 호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지적일부변경승인

1. 서울시고시제 169 호(75.10.18)로

지적 승인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시고속철도) 1호선의 인입선 일부 구간에 대한 지적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지하철본부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가. 지적 일부 변경 승인조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p style="text-align: right;">1975. 11. 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명칭	위치	폭	연장	비고
기정	1호선인입선	용두동 75-12 답십리동 525	9.6 ^m	1,105 ^m	공두동 694--3, 694-4, 695-1 695-7 부근 지적일부 변경
변경	·	용두동 75-12 답십리동 525	9.6 ^m	1,105 ^m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지하철본부 및 동대문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95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 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공용의 청사	강남구 삼성동 71-4 의 81 필지	209,933 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p>◎서울특별시고시제 197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신설 및 일부 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 시설결정 및 지정조서</p>	<p>고시한다.</p> <p>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12. 2</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시장(수정시장)	영등포구여의도동 1-902	-	990 (300평)	990 (300평)
변 경	도매시장(중압도매시장)	성북구중암동8-213 의	7,387 (2,237.8평)	감1,581 (479평)	5,806 (1,758.8평)

<p>◎서울특별시고시제 198 호 주택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p> <p>1. 건설부고시 제136호(75.8.25)로 사업실시 인가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225호(75.9.25)로 공람 공고한 면목1구역, 2구역 및 대방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1조</p>	<p>및 건설부고시 제307호(74.9.6)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예정자가 지정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 예정지의 사용 수익권은 소정의 토지 매수 수속을 완결한 후 부여되며 또한 지정지상에 사용이나 수익</p>
---	---

의 장애가 될 지장물이 있거나 또는 인접필지 연고자의 사용 수익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완전 제거한후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등 제반 여건이 완전 해소되는 때 부터 사용 수익권을 부여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개량 2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연고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별도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가본한다.

1975. 12. 3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9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1 호 (75.9.26)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부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650 의 8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인덕예술공과전문학교, 인덕실업고등학교
 3. 면적 및 규모: 25,347 (7,681평)
 4. 시행자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산 76 학교법인 인덕학원 이사장 박인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년 월 일:

1975. 11

- 나. 준공예정년월일:

1976. 3. 31

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적, 지락 및 소유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도봉구원계동	650	대	4,962㎡중	4,479 평	학교법인인덕학원	
"	산 92	임야		60 평	"	
"	산 93	임야		120 평	"	
"	산 89-14	임야	480㎡중	349 평	"	
"	611	전		524 평	"	
"	610	전	33㎡중	23 평	"	
"	612 외 1	전		151 평	"	
"	606	전	3,147㎡중	1,008 평	"	
"	산 81 외 13	임야	1,050㎡중	957 평	"	
계				7,681 평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12. 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단위: 평
시 설 명	구 획 번 호	위 치	도 면	비 고
국민 학교	256	강남구반포동 107 의 14 필지	4,200	
"	341	강남구서초동 573 의 15 필지	4,200	
"	168	강남구 삼성동 2 의 32 필지	4,200	
"	459 의 2 부력	강남구대치동산 4-1 의 1 필지	4,200	
"	674	강남구도곡동산 1-3 의 1 필지	4,200	
소 계	5		21,000	
중 학교	347 의 1 부력	강남구 압구정동 287 의 11 필지	4,500	
"	58-1 의 1 부력	강남구 잠원동 90-1 의 3 필지	4,374	
"	330 의 1 부력	강남구서초동 125 의 2 의 8 필지	4,500	
"	427 의 2 부력	강남구서초동산 185 의 2	4,200	
"	742 의 1 부력	강남구 양재동 1115-2 의 2 필지	4,200	
"	1120 의 1 부력	강남구 양재동 122	3,700	
"	1015	체비지 1015-1	4,200	
"	271	강남구 삼성동 163-29	6,271	
"	401	강남구도곡동산 1-1 의 1 필지	5,699	
"	711-1	강남구도곡동산 6 의 3 필지	4,500	
"	804 의 1 부력	강남구 압구정동 176 의 24 필지	4,500	
"	832 의 1 부력	강남구 압구정동 259-1 의 5 필지	3,954	
"	970	강남구 신사동산 69 의 1 필지	3,992	
소 계	13		58,590	

시 설 명	구 획 번 호	위 치	도 면	비 고
고 등 학 교	42	강남구반포동 345-7 의 6 필지	6,960	
"	596 의 3 부 력	강남구서초동 343-2 의 5 필지	5,418	
"	1023 의 1 부 력	강남구양재동 526-2 의 1 필지	5,950	
"	918 의 1 부 력	강남구포이동 359 의 15 필지	4,500	
"	367	강남구도곡동 산 6 의 10 필지	5,000	
"	679	강남구도곡동 산 1-15 의 23 필지	4,800	
"	586	강남구논현동 7-11	5,695	
"	758 의 1 부 력	강남구합구정동 199-2 의 3 필지	5,285	
소 계	8		43,608	
합 계	26		123,198	

별첨 도면표시와 갈음(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201 호

도시계획지구(방화지구)지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지구(방화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7754 호 75.8.22)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방화지구 지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방화지구	종로구세종로 및 종로1가 일부			8,730		
방화지구	종로구신문로1가 및 중구태평로1가 일부			21,030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세 보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공 고</div>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 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3조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 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p>◎ 서울특별시공고제 28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공고</p> <p>1. 지정 업체</p>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5수출목표액	비고
401	대경정밀공업 주식회사	박광채	성동구성수동 2가 269-62	자전거부품	226,121\$	
1013	동일피아노사	유홍석	도봉구창동116	피아노	31,276\$	
420	태평산업주식 회사	최정수	성동구성수동 2가 324-1	운동기구	588,100\$	
<p>◎ 서울특별시공고제 283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p> <p>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묘동-중묘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내의 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표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5. 11. 2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공 략 개 요</p> <p>1. 사업 시행의 위치 종로구 묘동</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묘동-중묘간 도로확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1) B = 15 m (2) L = 220 m</p> <p>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청</p> <p>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 75.10.27 - 76.12.15</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p>
---	--

< 별 첨 > 건물조서 및 공사토지조서

연번	번	지	구	조	수용 평수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인사	23-2	철근 콘크리트 및 세면 부력	10.0	9.0	묘동 140	백 숙 희	
2	"	27	목조와 증	11.0	3.0	서대문 녹번 156-121	임 성 수	
3	"	26	"	10.0	5.0	녹번동 26	최 성 덕	
4	낙원	283-2	"	14.0	5.0	마포 신수동 238-14	박 차 수	
5	봉익동	55-4	"	6.0	4.0	봉익동 55-4	주 범 숙	
6	"	55-6	"	11.0	3.0	" 55-6	강 익 수	
7	"	55-8	"	16.0	3.0	" 55-8	박 형 숙	
8	훈경	89-2	"	11.0	2.0	" 89-2	이 우 춘	
9	"	89-1	"	14.0	4.0	" 90	이 용 수	
10	"	92-1	"	15.0	1.0	인외동 129	허 숙	
11	"	92-2	"	48	4.0	인천남구옥면 산85	이 경 원	
12	낙원	284	"	15.0	3.0	284-30	김 순 이	
13	"	284-38	"	15.0	3.0	인사동 34	김 복 심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인사동 23-3	대	3.2	묘동 140	백 숙 회
2	" 27-2	"	3.7	서대문 녹번동 156-21	임 성 수
3	" 28-5	"	8.9	인사동 189-1	송 창 학
4	" 28-6	도로	14.4	중구 도동1가 35-5	최창성의2
5	" 28-4	"	1.5	관훈동 118-32	김 원
6	" 28-2	"	12.4	인사동 26	최 용 순
7	" 25-2	"	0.1	인사동 25	김 동 식
8	" 25-3	"	2.1	인사동 25	"
9	" 26-1	"	0.2	인사동 26	최 용 순
10	" 29	"	23.0	낙원동 283-2	강 정 창
11	" 30-2	"	25.9	인사동 106	안 금 남
12	" 31-5	"	24.7	" 39	신 한 수
13	" 31-1	"	14.3	" 31-1	"
14	" 31-3	"	3.7	" 31-1	"
15	" 32-1	"	12.0	중구 도동1가 3의 106	서울농협
16	" 36-2	"	0.6	인사동 36	최 우 현
17	낙원 283-41	"	52.4	마포 신수동 288-14	박찬수의3
18	묘동 90-3	"	14.0	묘동 90-3	유 기 우
19	" 22-2	"	30.0	돈의동 115	이 복 순
20	봉익동 19-5	"	2.7	봉익동 19-2	이 우 범
21	" 17-2	"	36.7	" 17	박 창 현
22	" 12-28	"	7.0	묘동 2	박 선 권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23	봉익동 36-4	도로	11.0	주 100-2	백운선
24	" 36-11	"	21.7	봉익동 146	박기숙
25	" 37-3	"	14.0	종로5가 285-8	청산홍돌
26	" 37-18	대	1.4	봉익동 154-2	백용녀
27	" 35-3	도로	0.9	" 35-1	한영옥
28	" 37-8	"	14.6	중구 삼각동 28	임커남
29	" 38-30	"	1.2	봉익동 126-2	김복순
30	" 38-31	"	1.2	" 38-7	김금남
31	" 37-16	"	23.0	" 36-1	이천희
32	" 38-32	"	2.0	" 38-7	김금남
33	" 38-33	"	59.5	미아동 517	이방수
34	" 38-34	"	10.1	봉익동 38-5	한정희
35	" 55-1	대	32.3	" 55-1	김덕점순
36	" 55-3	도로	0.4	" 53	문순득
37	" 55-16	대	8.1	" 55-4	주봉숙
38	" 55-19	"	6.5	" 55-8	박형숙
39	훈정동 88	"	24.0	창신동 404-1	노실환
40	" 89-2	"	3.2	입정동 3-2 훈정동 89-2	장영학 이병춘
41	" 89-1	"	17.2	" 90	이웅연
42	" 87-2	도로	18.0	" 87-2	금강정중
43	" 86-1	대	0.5	예치동 23	한근숙
44	" 92-3	"	2.3	인외동 129	허숙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45	훈정동 93	대	19.9	인천시 남구 유현동 산 85	이정원
46	" 93-4	"	3.0	"	"
47	" 92-4	"	4.0	"	"
48	" 93-8	"	2.6	"	"
49	낙원동 284-44	도로	15.7	낙원동 284-30	김순이
50	" 284-45	"	21.5	인사동 34	김복실
51	" 284-31	"	3.3	"	"
	계				

◎ 서울특별시공고제 284 호

환지예정지일부
변경 지정공고

1. 영등포지구회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입체교차로 확장파 도로폭의 조정 및 역삼, 봉은사 공원 확충 계획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공고제 265 호 ('75.11.4.)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 법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

정지를 변경지정 하였기 공고합니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면 송달될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5. 12. 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285 호

환지계획일부
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시흥, 신림,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제 33 조 및 행정편환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합니다.

1975. 12. 2.

서울특별시 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시흥, 신림,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
2. 변경지역 : 영등포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동, 영등포구 내발산동 일부지역.
3. 필지수 : 26 필

4. 변경조서 및 도면 : 조서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끝.

◎ 서울특별시 공고제 28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 로 고시된 도로 (장교동 지내 가각정비) 공사 구간내에 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표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게 한다.

1975.

서울특별시 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45번지 앞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도로 (장교동지내 가각정비) 공사

<p>3. 사업의 규모</p> <p>(1) 하수도 토판매실 (0 = 60) = 108m AS포장 = 3.27</p> <p>(2) 보차도 경계부벽 = 98m 보도부벽포장 = 3.82 측구 = 98m</p> <p>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1975.11.10 - 1976.12.1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p>
--	--

<별첨>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장교동				45-1	대	2.7	장교45-6	서명숙
2	"				45-13	"	24	"	"
3	"				45-14	"	5.1	"	"
4	"				45-15	"	33.1	후암41-11	안동규
5	"				46-2	"	31.3	성북14-16	김영애 외1인
6					46-3	"	7	"	"
7					47	"	1.8	장교 9	유정우
8					47-1	"	2.2	"	"
9					48-1	"	10.2	48	박영규
10					48-2	"	7.9	삼각16	이영준
11					48-4	"	8.8	70-2	박용규
12					48-5	"	21	화곡산49-4	최상호
13					49-2	"	24	수송71-1	김덕운
14					51-2	"	5.6	장교51	김관일
15					51-5	"	9.8	"	"
16					51-7	"	5.3	마장 564-7	조운
17					51-8	"	7	"	"

건 물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상)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종 류	건평	주 소	성 명	
	장교동				47	목조와습	3	9		유 정 우
					45-5	"	48	45-6		김 영 찬
					45-2	"	20	남창동 193		안 동 금
					48	역외조과습	62	장사동 24		박창규외 4인
					49	목조스케트	11	종로수송동 12-1		김 덕 울
					51-1	"	6.6	51		김 관 일
					51-2	"	5.6	51		"
					51-3	"	9.3	마장동 764-7		조 운
					51-4	"	7	"		"
					45-5	목조와습	11	45-6		서 병 숙

<p>◎ 서울특별시공고제 287 호</p> <p>환지에정지지정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시행중인 망우추가, 경인, 역촌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267(75.11.7) 호로 품람 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확정인가하고 환지에정지를 별첨 도서의 같이</p>	<p>지정하였기 동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2. 환지에정지 변경지성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성비과와 관할구정 및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p>
---	--

<p>공고로 가롭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5 . 12. 5 서울특별시</p> <p>◎서울특별시공고제 288 호</p> <p>전기용품제조업 허가 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p>	<p>동법시행령 제 18 조 제 3 호의 규정 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 12. 8 서울특별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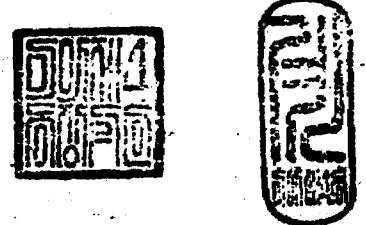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취소사유
한풍공업(주)	신준성	1-8-21	영등포개봉동 182-2	법정기간내 형식승인미취득
신진정밀	신춘자	1-8-17	영등포당산동 3 가 475	.













<p>◎서울특별시공고제 289 호</p> <p>환지계획 (일부 변경) 인가 및 예성지 지성공고</p> <p>1.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 지정 누락과 소유권 분리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있어 서울특 별시공고 제 273 호 (75.11.17) 로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p>	<p>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인 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 였기 공고합니다.</p> <p>2. 환지예정지 변경도시는 당시 도시 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시민 봉사실 및 천호출장소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공람에 공합니다.</p> <p>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공고사항을 서면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 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 12. . 서울특별시</p>
--	---













<p>㉔ 서울특별시공고제 29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인가신청에 따른 공고</p> <p>1. 당시가 시행하는 양우, 시흥, 김포, 선림, 화양수가, 신림수가, 영동수가, 천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인가를 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한다.</p>	<p>2. 사업변경인가에 따른 관계서류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경매과 및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통지는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12.8 서울특별시장</p>
--	--

지 구 명	거간연기할면적	준공예정일	연기준공예정일	비 고
양 우	1,951,969.7평	75.12.31	77.12.31	2 년
김 포	1,423,560	"	"	"
시 흥	1,736,416	"	"	"
선 림	1,034,555	"	"	"
화 양 수 가	460,588	"	"	"
신 림 수 가	627,048.3	"	"	"
영 동 수 가	530,645	75.12.30	"	"
천 호	785,000	75.12.31	"	"

<p>◎ 도 봉 구 공 고 제 358 호</p> <p>공인신조 (개각) 및 폐기공고</p> <p>도봉구 미아제 4 동, 미아제 5 동, 미아제 7 동, 수유제 3 동, 삼계제 1 동, 공릉동, 중계동장의 공인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개각사용하기에 이를 공고한다.</p> <p>1. 신조 (개각) 공인사용일자: 1975.12.1 09:00</p> <p>2. 구 공인 폐기일자: 1975.11.29 13:00 1975.11.25 도 봉 구 청 장</p>	<p>1. 신조공인명 미아제 4 동장, 미아제 5 동장, 미아제 7 동장, 수유제 3 동장, 삼계제 1 동장, 공릉동장, 중계동장인 및 개인</p> <p>2. 신조공인의 인명 : 별첨</p> <p>3. 폐기공인명 미아제 4 동장, 미아제 5 동장, 미아제 7 동장, 수유제 3 동장, 삼계제 1 동장, 공릉동장, 중계동장인 및 개인</p> <p>4. 폐기공인의 인명</p>
공 인 의 인 영	

동 명	폐 기 인 영	개 각 인 영
미 아 제 4 동장인 제 인		

동 명	제 기 인 영	제 각 인 영
미 아 제 5 동장인 계 인	 	 
동 명	제 기 인 영	제 각 인 영
미 아 제 7 동장인 계 인	 	 
동 명	제 기 인 영	제 각 인 영
수 유 제 3 동장인 계 인	 	 

동 명	폐 기 인 영	개 작 인 영
상 계 1 동장인 계 인	 	 
동 명	폐 기 인 영	개 작 인 영
공용 동장인 계 인	 	 
동 명	폐 기 인 영	개 작 인 영
승계 동장인 계 인	 	 

사 령

○ 1975.11.26

영선과 지방기계주환상
기원보시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5.11.28

건축지도과 과장건축
기
실두한
75.12.1~12.14 (14일간)까지
해의출장을 명함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 1975.12.2

보건행정과 지방보건
기
박말봉
환경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신동휘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보(행리) 김광복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1 항 1 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5.12.3

종로구 지방건축
기
최규환
주택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주방부 토목기사 김현균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도로보수과근무를 명함.

주방부 교육기사 김중현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도봉구근무를 명함.

○ 1975.12.4

도시계획과 지방토목
기
권완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5.8.20 (발령제 496 호)

전직제봉을 동일자로 취소함.

주택건설사업소 지방건축
기
최규환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서대문구 지방건축
기
김길동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건축지도과 지방건축
기
사보 박진영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p>○ 1975.12.5 영등포구 지방농림 안상영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 를 해제함.</p>	<p>송도구보진소 지방행정 박재진 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 직에 처함.</p>
<p>○ 1975.12.8 동대문구 지방행정 이종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9.15 (칼명 562 호) 징계처분(파면) 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1 월에 처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p>강남구보진소 지방행정 노재신 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정 정

시보 계 531 호 (75.11.25) 에 기재된 서울특별시 훈령제 435 호인 서울특별시 민원사무처리요령중 개정규정중 기재누락된 별지제 1 호서식 내지 제 7 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 제 16 조제 3 항 "별지제 7 호" 를 "별지제 6 호" 로 하고 제 17 조제 4 항중 "별지제 4 호" 를 "별지제 7 호" 로 정정한다.

1975. 12. 3

서울특별시장

<별지제1호서식>

민원서류처리부

사 일			접 수		종 류	건 명	신청인		경유처		처리 기한	협의 조치 일일	회 신 일일	실정사 조사 일일	보완 시달 일일	보완 접수 일일	인허 일일	처리 구분	주 무 자
과 장	제 장	취 급 자	일 일	번 호			주 소	성 명	접수 일일	전달 일일									

2003-4-10(1)
9.11.30 승인

520 mm X 36 mm (백상지 70g/m)

제 532 호
시 보
1975.12.3 47-41

0157

<p>< 별지제 2 호시식 ></p>	
접수증번호	출 원 인
계 목	
소 관 처	
<p>접 수 증</p>	
접수증번호	
계 목	
소 관 처	과 계
<p>위 와 같 이 접 수 합 니 다 .</p> <p>1974. . . .</p> <p>취 답 자 소 속</p> <p>성 명</p> <p style="text-align: right;">귀 하</p>	
2009-6-20 (1-2) 00.11.30 승인	190 mm x 134 mm (신준용지 50 g/ml)

<별지 제 3 호 서식>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사항 처리부

결 제 집 수			종 류	건 명	민원 요지	민원 인				처리 기	처리 기	처리 기	처리 기
과 장	계 장	담당자				수 일	번호	권수자	수 소				

02-03-10 (2-3)
1975.11.30 승인

520 mm X 360 mm (박상지 70 g / m²)

< 별지 제 4 호 서식 >

민원서식 공통규격서

1. 민원서식 : 민원사무편람의 단위, 민원사무별 서식참조
2. 용지의 크기 : 190 mm X 268 mm을 원칙으로 하여 배순으로 줄이거나 확대하여 사용함.
3. 지질 및 평량 : 신문용지 50 g / 평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내용에 따라 백상지 (60 g / 평) 또는 박엽지 (19 g / 평) 를 사용할 수 있음.
4. 용지의 색채 : 백
5. 활자의 색채 : 흑
6. 활자의 크기 및 종류
서식의 크기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정하되 계목은 고딕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는 다음에 따른다.

계 목	14 급 활자 고딕체
발 급 자	14 급 활자 명조체
내 용	10.5 또는 9 급 활자
기 타	7 급 활자
7. 서식의 외곽선

용 지	상단부터 상부기본선 까지	30 mm
	좌단부터 좌측기본선 까지	20 mm
	우단부터 우측한계선 까지	20 mm
	하단부터 하단한계선 까지	15 mm
8. 서식의 실제규격 : 155 mm X 213 mm
9. 서식의 하단한계선 우측에 용지의 크기 및 지질과 평량을 인쇄하고 좌측에는 서식의 승인번호 및 승인일자를 인쇄하여야 함.
10. 민원서식 이면에 처리과정도표를 인쇄하여야 함.
단, 부사를 하거나 또는 이면에 신청내용을 인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지제 5 호서식>

(보완통지서식「황색」)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번호 <u>민원서류번호</u>	번호 <u>197</u>
발송일 197	민원서류번호
수신	수신
제 목 민원서류보완	제 목 민원서류보완
미비사항	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중 다음 사항이 미비되었으니 보완하시어 70.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처리하여 드리코자 합니다.
1.	미비사항
2.	(1)
3.	(2)
제출일자	(3)
소속과	2. 지정기일까지 미비사항을 제출치 못하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바라오며 만약 연락이 없을 때에는 신청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반려하겠습니다
담당자직명	소속 직명
성명	성명
	「주의사항」보완서류제출시에는 본 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6-30 (1-3)
69.11.30 승인

190 mm x 268 mm (신문용지 50 g / m²)

47-46 계 532 호

시 보

1975.12.3

<별지제 6호서식>

민원사무통계부

월 일
발신 서울특별시
분서통계관

수신 과장

월 일	접 수 번 호	건 명	신청자	처 리 기 간	조 파 기 간	지 연 통 지	보 완 통 지	처 리 일 자

2003-6-40 (1-4)
1969.11.30 승인

268 mm X 190 mm (신문용지 50 g / 평)

<별지제 7 호서식>

민원사항검열부

검열월일		검열총건수	
검열권		지적건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건 수		민원서류명	구 분	지적사항	조치내용
월 일	번호				

2003-6-50 (1-5)
1969.11.30 승인

190 mm x 268 mm (신문용지 50 g / m²)